‘21대 총선’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!

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제3항

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
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◆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부적절한 장애인 관련 발언으로 장애인 단체의 항의와 사과 요구가 되풀이됨

- ✓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보낸 “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에 대한 의견표명”을 통해 “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” 할 것을 요구
- ✓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“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” 이라고 촉구

◆ SNS 등을 통해 정치인의 부적절한 발언이 여과 없이 확산

- ✓ 장애인 비하 발언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,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자칫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므로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정치인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
- ✓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큼

◆ 21대 총선에 정당과 후보자는 선거유세 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

- ✓ 이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장애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 형성을 위해 정치인이 주의해야 할 장애 관련 부적절한 표현을 살펴보고 올바른 표현 제시

장애인먼저 실천운동본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신고 1644-8295